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1132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5. 12. 시행)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,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·절차 규정 정비(안 제17조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9항 개정,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삭제)
-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,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
- 나.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·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(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)
-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(별지 제9호서식)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
 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
 -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

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

다.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·연장 절차 신설
(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)

-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(별지 제9호의3서식)에
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
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

-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
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,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
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(별지 제9호의5서식)를 제출하도록 함

라.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
(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식 신설)

- 국외제조·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
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
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
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없음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”을 “공동제출하기”로, “를 구성하고 당사자”를 “의 구성원은 상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를 “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”을 “협의체의 구성원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당사자들의 합의”를 “합의”로 한다.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)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“조정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·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인 및 협의체의 구성원(대표자를 포함한다)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자료제출요청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조정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조정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)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
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 유예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유예기간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

2.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검토결과 통지서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)

3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4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5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45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업무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.

1.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
2.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기존 선임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별표 11 제1호 구분란 사목 중 “법 제45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45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9호의2서식, 별지 제9호의3서식, 별지 제9호의4서식, 별지 제9호의5서식 및 별지 제3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[별지 제9호의2서식] <신설 2026. 5. 12.>

제 호

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요청서

관계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		
	소재지(사업장)			
화학물질명 (총칭명, CAS No.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)				
자료제출기한				

자료제출내용

제출대상 자료명칭	사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직인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 <신설 2026. 5. 12.>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신청내용	화학물질명 (총칭명)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
	공동활용 자료 종류	[] 물리적·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 [] 유해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
	유예기간	년 월 일까지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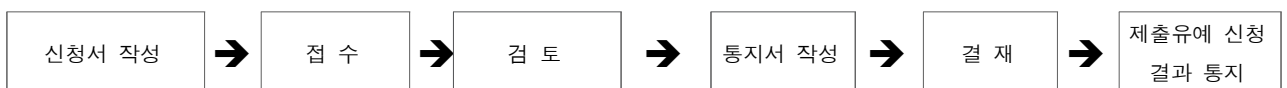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“공동활용 자료 종류”란의 시험항목은 제출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을 기재합니다.
- “유예기간”란은 희망하는 기간(해당물질의 화학물질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)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별지 제9호의4서식] <신설 2026. 5. 12.>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
있습니다.

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(연장) 신청결과 통지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통지내용	화학물질명 (총칭명)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)	
	공동활용 자료 종류	[] 물리적·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 [] 유해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
	유예 기간	년 월 일까지
	연장 유예 기간	년 월 일까지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(연장)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장을 []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[]불허용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직인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5서식] <신설 2026. 5. 12.>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연장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제출유예 내용	화학물질명 (총칭명)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)		
	공동활용 자료 종류	[] 물리적·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 [] 유해성에 관한 자료 (시험항목:)	
	당초 유예 기간	년 월 일까지	
신청내용	연장 유예 기간	년 월 일까지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.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검토결과 통지서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) 3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4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“연장 유예 기간”란에는 희망하는 기간(당초 유예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범위)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ce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별지 제38호의5서식] <신설 2026. 5. 12.>

국외 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자 업무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4일
업무승계 대상자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기존 수행자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	선임번호			
국외 제조(생산)자	상호(명칭)	제조(생산)국	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(이메일주소:)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최종 수출자	상호(명칭)	제조(생산)국		
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(이메일주소:)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화학물질 정보	화학물질명 (총칭명, 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
	관리번호			
	제품명	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를 같음하여 기존에 선임된 자의 업무와 그 효력을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.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및 기존 선임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-----	--

작성방법

- "업무승계 대상자"란은 국외 제조(생산)자에 의해 새롭게 선임된 자로서 기존 선임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한 자를 적습니다.
- "기존 수행자"란은 업무승계 대상자 직전의 기존에 선임된 자를 적습니다.
- "최종 수출자"란은 국외 제조(생산)자에 의한 선임(해임)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 적습니다.
- "화학물질 정보"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.
- "관리번호"란은 화학물질의 화학물질등록번호, 화학물질신고번호, 화학물질등록등면제확인번호, 중점관리물질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·제출 신고인	⇒	접수 한국환경공단	13⇒	검토 한국환경공단	⇒	신고증 통지 한국환경공단
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⑥ 대표자는 협약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.

⑧ (생략)

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⑩ (생략)

<신설>

<삭제>

<삭제>

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
----- 합의 -----
-----.

⑩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)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“조정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

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·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·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

<신 설>

인 및 협의체의 구성원(대표자를 포함한다)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자료제출요청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조정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조정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)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

임사실 신고증(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 유예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유예기간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연

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업무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임 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.

1.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
2.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기존 선임자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